

의안 번호	제3705호
----------	--------

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생활쓰레기 중 ‘수도권매립지’ 나 ‘김포시자원화센터’ 로 반입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가정특수쓰레기(이불, 의류 등) 및 대형쓰레기(매트리스, 가구 등)와 무단투기 쓰레기, 방치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,
-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‘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’ 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수탁자 : 폐기물중간처분업(소각전문)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(기계적 처리전문)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 위탁처리 이행실적이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
- 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
- 다. 위탁방법 : 일반(총액)입찰
- 라. 위탁내용 :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
- 마. 위탁사무 :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
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70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0. 21.
제출자 도시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, 기간 내 사업 성과 및 업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. 이에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30. 12. 31.” 을
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 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30. 12. 31.”을 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로 한다.

동의안·수정안 비교표

동 의 안	수 정 안
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30. 12. 31.	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26. 12. 31.